

상속세의 저주

2020년 11월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Financial Times (Jan. 13. 2020)

* 한국 재벌가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성장시키며 부와 권력을 구축했으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위기를 겪고 있다.“

* "韓 고율 상속세, 폐허된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성장시킨 '가족경영 대기업' 위협"

* 경기도 광주의 한 우유배달원: "재벌의 상속세가 얼마든 그들은 평생 쓰고도 돈이 남을 것이다. 내가 평생 우유를 판들 수조 원을 벌 수 있겠냐."



South Korean business & finance

South Korean inheritance tax threatens family business

...as a cohort of elderly tycoons slip into frail health in a country with an inheritance tax that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Compared with 20 years ago when my parents set up the company, the...

JANUARY 13, 2020

상속세에 대한 인식들

- 박용진(민주당):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것과 아들과 무슨 상관인가? 아들이 뭘 도와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 강은미(정의당):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은 적다. 2019년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 9,555명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2억5400만원이며 세금은 1인당 475만원 수준.
- 김두관(민주당): 부모 재산 상속, 증여 4억원으로 제한하고 상속세로 재원마련하여 사회불평등 해소해야. '기본자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예정.

상속세에 대한 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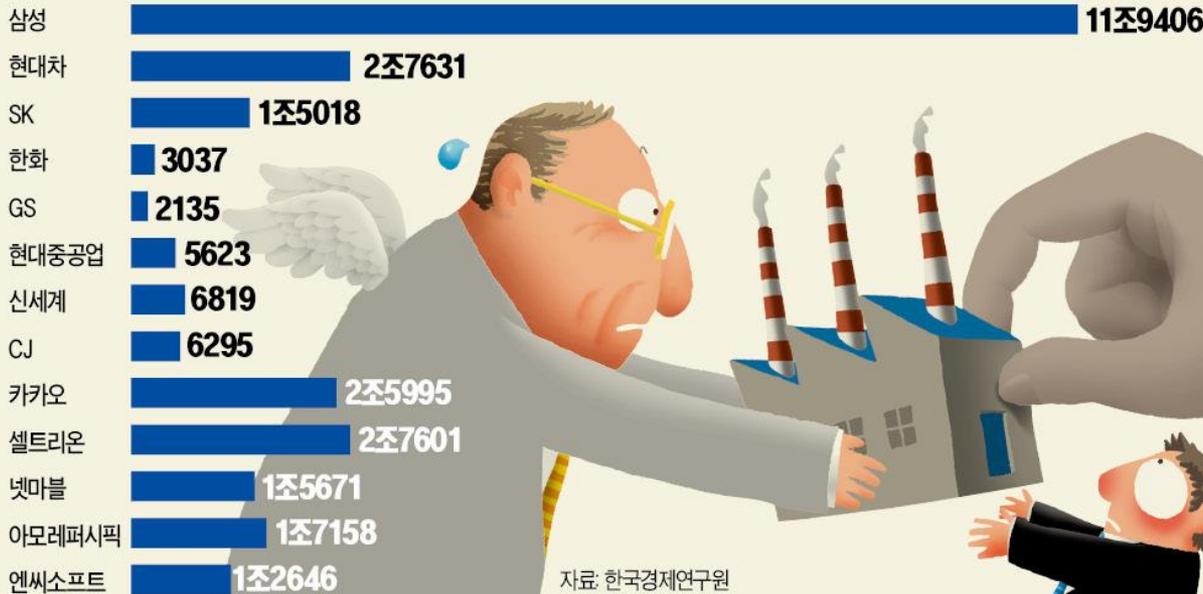
- 최고세율은 50%, 각종 공제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27.9%(2018년).
- 2018년 피상속인 수 356,109명 중 8,002명 즉 2.25%만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국세 수입 비중은 0.9%(2.52조원).
- 상속세 폐지국가들의 높은 소득세로 조세형평성 유지. 캐나다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3.5%.
- 상속받은 재산은 개인의 재산인가? 배당을 받거나 상여금을 받아 세원을 마련할 경우: 현재 상정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10억 이상의 경우 45% + 지방세 4.5%, 합 49.5%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6.67%, 고용보험과 요양보험 2.18%. 합 58.25%
- 회사의 재산은 대주주의 재산인가? 한국반도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이건희회장의 '사재출연'의 의미: 회사에 출연하면 소득세를 내고 받아올 수 있다.
- 상속세를 내려면 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가?
-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평균은 26%인가, 14.5%인가? (통계적 속임수)

삼성의 추정 상속세

- 보유 주식 18조2251억원 60% 상속세에 자진신고 공제 3%, 10조6천억원 (부동산등 주식 이외 재산 제외)
- 연 1.8% 이자 적용하여 6회 분할납부 (연부연납)예상, 연 약 1.8조원의 세금납부
- 연 1.8조원을 만들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상여금이나 배당을 받으면 종소세를 납부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6년간 매년 최소 3.6조원을 배당 받아야 함. 상여금이나 배당은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이것도 불가능
- 주식을 매각하여 지분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음. 주식 매각 때는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납부해야 함. 결국 경영권을 잃고 주인 없는 회사가 됨.

“상속세 부담도 큰데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할증이 붙고,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면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리까지 더하면 세금을 최대 75% 내야 한다”. 배당이나 상여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소득세를 내고나면 상속가액의 2배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국내 주요 그룹 예상 상속세 규모 (단위: 억원)



고액 상속세 부과 사례 (단위: 억원)



마르크스 공산당선언(1848)

-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 토지소유 폐지와 국유화
- 은행의 국유화
- 교통, 운송수단, 공장의 국유화
-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소득세 부과
-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의무 부여
- 모든 아동들에 대한 무상 교육

국가별 상속세

- 상속세 없는 국가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러시아, 마카오, 홍콩,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부루나이, 체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상속세 10% 이하 국가들: 이태리, 스위스, 폴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 상속세 20% 이하 국가들: 그리스,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 OECD 35개 국가 중 15개국 상속세 없음
상속세 존재하는 국가 평균 상속세 26%
OECD 국가 전체의 상속세 평균 14.5%
- 일본은 사망자 재산의 10%, 미국은 4%가 국가에 귀속.

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실효세율 27.9%, 기재부 세재실장은 19.5%.
- 2018년 피상속인 35만명, 500억 이상 상속한 경우 0.003%, 12명
-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적정한 소득분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에 따른 계층 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취지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 재산에 대한 충분한 과세는 어느 세금보다 정당성도 높습니다.” -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736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SBS 2020. 10. 28.)

상속세에 대한 오해

- 대부분의 상속인들에 해당되는 30억원 이하 상속할 경우 공제액수가 있어서 실효세율이 낮아짐. 1억: 10%, 5억:20%, 10억: 30%, 30억:40%, 30억이상: 50% (50억이상: 60% 추진중)
- 이 경우를 공제액수의 의미가 없는 기업인들에게 적용함.
- 2018년 500억 이상 상속한 경우가 단 12명이라고 한다면 이는 12개의 기업이 상속된 경우임.
-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배당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세를 또 납부한다면 12개의 기업이 사라지거나 국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상속재산이 기업일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는 세금의 원천과 일자리(직장)뿐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땀, 노력, 기술, 경험, 시스템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 국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상속세 폐지, 공제, 유예

-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Ten Years Without the Swedish Inheritance Tax
(A. Ydstedt, A. Wollstad. 2005) : 세수 증가 결과

- **독일의 가업상속**

7년 경영 후 상속세 전액 공제.

연간 평균 17,645개 기업들 가업상속 혜택(한국 62개)
실질 과세 0 ~ 4.5% (15% x 30%)

- **미국의 가업상속**

기본 상속세 면제 1인당 1,170만불, 부부는 2,340만불
황금주, 차등의결권, 공익재단 기부 시 세금 면제 등

- **일본의 가업상속**

비상장주식의 80% 납세 유예. 5년 후 납부 면제
실질과세 0 ~ 11%(55% x 20%)
100년 이상 기업 33,000개, 우리나라 7개

주요국의 자녀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단위:%)

국가	명목 최고세율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실제 부담 최고세율
 독일	30	지분 및 임금 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0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0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25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0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0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유로 초과)~100%(107만유로 이하) 공제	3.40
 한국	50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제한적 공제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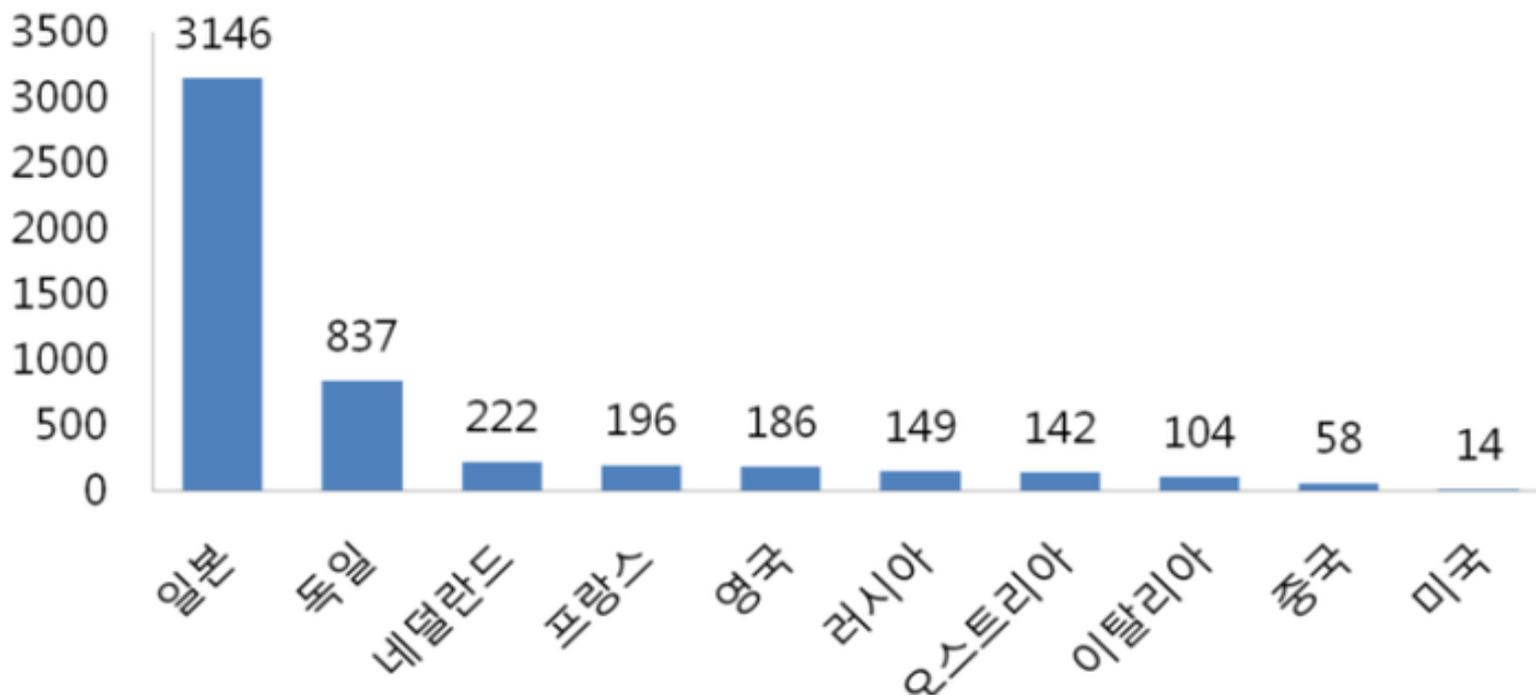
최대주주 할증때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은 기업 규모별 제한 없음. 벨기에는 브뤼셀 기준

자료: EY한영, 한국경영자총협회

200년 장수기업 나라별 비교

나라별 장수 기업수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

업종유지, 지분유지, 자산유지, 고용유지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제도

10년 이상 지속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 3천억 미만 증견기업

최대주주가 (가족포함) 50% 이상 지분 소유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일 기준으로 2년 전 부터 가업 종사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대표로 재직

상속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로 재직

10년 이상 동안 대표로 재직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5년 이내 10% 이상 매각 금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기존 고용인원 100% ~200%(증견) 유지

1년 이상 휴업 금지

10년 이상 200억까지, 20년 이상 300억까지, 30년 이상 500억까지 공제

요건을 어길 경우 이자를 추가한 상속세 부과

지분유지와 가업종사기간 축소 검토 중

업종 범위 확대(예: 냉면과 스파게티, 전구 생산과 LED 생산) 검토 중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 제출,
2020년부터 시행 예정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 기준 유지

- 현행 3,000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 현행 10년 → 7년

*가업상속공제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소분류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 승인시 중분류 외 변경도 예외적 허용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 의무 완화

(현행 20% 이상 자산 처분 금지)

- 자산 처분 비율 산정시 예외 범위 확대
(업종 변경 등으로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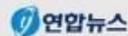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 완화

-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 의무 인원 기준 인원의 120% → 100%

불성실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배제

- 상속인·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공제 배제·사후 추징

자료/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영은 기자 / 20190611 YONHAPNEWS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방안

가업상속 관련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구분	현행	개정
사후관리 기간 단축	10년	7년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위원회 승인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자산 유지 의무 완화 ※ 20% 이상 처분 금지	수용·사업장 이전 시 대체 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불가피한 예외 확대 예) 업종 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 유지 의무 완화	매년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 기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은 120%)	(좌중) 중견기업도 120%→100%
불성실 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신설)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 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배제(사전)·추징(사후)

자료: 기획재정부

* 소분류내 변경허용하던 것을 중분류내 변경 허용으로 바꾸었음. 욱실제품 제조업이 중분류상 22번이었는데, 양변기 제조업(23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비데 제조업(28번,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변경하려 했는데 중분류상의 변경허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포기. 폭넓게 허용 해야함.

* 세무조사를 받아서 벌금을 내게 되면 공제배제되고 사후 추징됨. 이 경우 작은 회계상의 실수로도 사업을 접어야할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가업상속공제 신청자가 1% (100개 회사 미만)내외. 유명무실한 탁상공론의 제도로 전락. 금고형이 아닐경우 불성실 기업에서 제외하고, 금고형일 경우에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고 예측 경영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가업상속공제 제도 비교

가업상속공제제도 비교

항목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가업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비사업용자산 50%(85%공제) 또는 10%(100%공제) 이하인 기업	규모·업종 제한없음	비상장중소기업(풍속영업회사·자산관리회사 제외)
피상속인	10년이상 경영, 대표이사 재직, 최대주주	피상속인의 총 지분율 25% 이상	상속 직전 피상속인이 2년간 소유	대표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총지분율 50%초과
상속인	18세이상, 승계 이전 2년이상 가업종사, 2년내 대표이사 취임 등	없음	없음	선대경영자 친족, 5개월 내 대표취임, 최대주주 등
공제한도	200억원~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자산의 85%/100% 2,600만유로 초과 상속시 9천만 유로 한도 	기업지분·비상장주식 100%, 상장주식·사업용자산 50%	취득한 자사주식의 80% 납세유예·면제
사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기간: 10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소분류 내 변경 허용) 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100% 유지 고용유지: 매년 80%+10년 평균 고용 100%(중견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기간: 5년 or 7년 가업유지: 휴·폐업 금지 가업재산 유지: 처분비율만큼 추징 지분 및 자본유지: 배당외 출자자 본의 회수 (15만 유로 이상) 금지 고용유지: 5인 이하는 규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인: 급여총액 7년 500%, 5년 250% - 11~15인: 급여총액 7년 565%, 5년 300% - 15인 초과: 급여총액 7년 700%, 5년 400%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기간: 5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지분유지: 최대주주, 지분 50%초과 유지, 상속주식 처분금지 고용유지: 5년 평균 80%

자료: 안중석 외(2014), pp.65-73 및 김경아, 「국내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연구」, 2018, pp.78-80을 참고하여 작성

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 활용

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활용 비교

구분	한국		독일	
	건수	공제 금액(원)	건수	공제 금액(원)*
2011	46	325억	12,546	30조 8,643억
2012	58	343억	13,519	58조 1,710억
2013	70	933억	17,200	49조 5,410억
2014	68	986억	20,955	92조 3,574억
2015	67	1,705억	24,006	71조 2,688억
평균	62	858억	17,645	60조 4,405억

- * 2011~2015 각 연도별 평균 환율을 원화로 환산
- * 출처 :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2017)

상속세의 문제점

- 상속세(사망세)는 이중(삼중)과세인가?
소득세 + 상속세(증여세) + 소득세(배당후 납세할 경우)
- 상속세는 위헌적인가?
사유재산제도 보장을 침해하는 '헌법개정한계'
'과잉금지의 원칙'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상속세로 사기업이 국유화되는 제도는 헌법소원 대상
- 과연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가?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사례
1.52조 상속, 9천2백억 상속세,
소득세 46.2% 납부하고 상속세 납부 시 1.7조 원 배당 필요

대안: 상속세 폐지 아니면 자본이득세 도입

- 상속세 폐지의 대안으로 가업상속이 이루어 지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자본이득세) – 송실대 전규안교수 (2018,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
- 상속받은 자산이 회사의 주식일 경우 대체로 주식매도가 아니면 세금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주식을 처분할 때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연 해주는 방안 도입 필요. 회사의 자산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갈 때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혜택이 아님. 이 경우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고용유지 등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기업을 처분하지 않고 기업이 영속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요약1

- 상속세 개정해야!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최고 60%)의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다.
- 상속세는 이중과세이고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 있다.
- 현재의 가업상속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는 기업이 거의 없다(연 100개 미만).
-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OECD 국가들의 추세에 따라야.
-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상속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도 상속세가 없다.
-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 상속세는 1%가 되지 않아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상속세를 없앨 경우 국제경쟁력 제고, 고용 증대 그리고 법인세 수입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클 것이다.
- 상속세가 있더라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해야 절약이나 성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되지 않는다.
- 가업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의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한다. 즉 상속받은 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상속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연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요약 2

- 상속 발생 시 대기업은 주인을 잃거나, 중소기업은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면서, 기업의 영속성이 사라지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가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회사를 잃게 된 스웨덴의 제약회사 Astra의 상속인들의 경우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난 것처럼,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자녀들이 상속세로 인하여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아, 세계는 상속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 상속세 실효세율이 20-30%라거나, 고액 상속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이 사라지고, 기업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될 것이다.
- 국가와 우리 사회는 상속세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어야 한다.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결국 기업도 사람도 그리고 국가도 가난해진다. 평등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가난하게 평등해진다.